

(앞쪽)

제 호		교육확인 누름도장	
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(☐ 운전자용 ☐ 동승보호자용)			
교육 이수자	성명		생년월일
	주소	(전화번호 :)	
이수 과정	과정명		이수일자
차기 교육기간	년 1월 31일 ~ 년 12월 31일		
위의 사람에 대하여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.			
년 월 일			
경찰청 로고	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		한국도로 교통공단 로고
(주)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			

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용: 105mm×152mm[인쇄용지(특급) 120g/㎡]

(뒤쪽)

유 의 사 항
1.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 53조의3제1항에 따라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2.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에 안전교육 확인증을 비치해야 합니다.
3.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려는 경우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